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 북 구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34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바. 영업자의 협조에 대한 사항(안 제7조)
- 사.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 나. 합 의 : 해당없음
-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3. 4. 13. ~ 5. 3.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5)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반영)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아동영향평가 : 대상아님

구분	개선권고 의견	반영 여부	반영내용
부패 영향 평가	○ 안 제6조제1항, 제2항 - 운영현황 점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지원하면서 운영현황 점검이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고, 일반 주민에게 운영현황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반영	○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 -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 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

제4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교부
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지급
3. 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
4. 방역물품 및 소독 지원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 성 자

안전생활국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4
----------	--------

제안 연월일: 2023년 6월 23일

제안 자: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 자구수정 (조문내용변경)

2. 주요내용

제1조 “물가안정” 을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으로, “이바지함” 을 “기여하는 것” 등 으로 수정하여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물가안정”을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으로, “이바지함”을 “기여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을 ““착한가격업소”란”으로, “개인 서비스 사업에”를 “개인서비스 사업 에”로, “일정 기준”을 “일정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중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를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며,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착한가격업소에 대한”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예산의 범위에서”를 “착한가격업소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착한가격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지급”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4호, 제5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3.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제7조(종전의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종전의 제7조) 중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를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내 소</u> <u>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u> <u>고, 지역물가안정</u> ---- <u>기여하</u> <u>는 것</u>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 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 용업, 세탁업 등 <u>개인 서비스</u> <u>사업에</u>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u>일정 기준</u> 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 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 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 소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① “착한가격업 소”란 ----- ----- ----- <u>개인서비</u> <u>스 사업</u> 에 ----- ----- ----- ----- <u>일정기준</u> ---. ②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 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 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제4조(지정 및 취소) ----- -----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

<신 설>

제4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 착한가격업소에 -----.

1. “착한가격업소” -----

제작·교부 2. <u>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지급</u> <신 설> 3. 4. (생 략) <신 설>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u>를 위하여</u>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생 략) 제7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u>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u> <신 설> 제8조(포상) <u>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u>	----- 2. ----- <u>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u> 3. <u>소규모 시설환경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u> 4.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6. <u>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u> 7. ----- -- <u>위해</u> ----- ----- 제8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9조(영업자의 협조) ----- ----- ----- ----- <u>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u> -----. 제10조(시행규칙) <u>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부 칙 제7조(포상) <u>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u>
--	---

<u>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u> <u>부 칙</u>	<u>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u>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②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교부
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3.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4. 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
5. 방역물품 및 소독 지원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